

의안번호	제 287 호
의결 연월일	2015. . . . (제 회)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5년 11 월 4 일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선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7
----------	-----

발의연월일 : 2015년 11월 4일

발의자 : 장선배,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임병운, 최병윤
이숙애

1. 제정이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홍보와 다각적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안 제2조)
- 나.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확대 노력 규정 (안 제4조)
 - 충청북도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등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3/100으로 하되, 전체 공무원 정원의 5/100까지, 지방공기업등은 상시 고용 근로자 수의 5/100까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다. 도지사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 및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명시함. (안 제6조)
- 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함. (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5-30호

라. 협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협의

마.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꾀함으로써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관한 국가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등도 상시고용 근로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률 현황 파악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와 관련하여 매년 도 및 지방공기업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파악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2.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
3.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취업 후 적응 지도)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3장·제4장·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12.12.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지원에 따른 사업비 발생

2.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비
-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비

3. 관련조문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5년 추진중인 사업비를 기초로 산출

나. 추계 결과 : 6,762,638천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 1,048,351천원
-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비 : 5,701,287천원
-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비 : 13,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비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국비 80%도비 6%, 시군비 14%
-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비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6,762,638	6,812,000	6,813,000	6,814,000	6,815,000	34,016,638	
국비	3,371,459	3,371,500	3,372,000	3,372,500	3,373,000	16,860,459	
도비	1,089,763	1,089,913	1,089,763	1,089,763	1,089,763	5,448,965	
시군비	2,301,416	2,350,587	2,351,237	2,351,737	2,352,237	11,707,214	
세 출	6,762,638	6,812,000	6,813,000	6,814,000	6,815,000	34,016,638	
장애인직업재활 시설기능보강	1,048,351	1,049,000	1,050,000	1,051,000	1,052,000	5,250,351	
장애인일자리사업	5,701,287	5,750,000	5,750,000	5,750,000	5,750,000	28,701,287	
장애인기능경기대회지원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재원 조달	6,762,638	6,812,000	6,813,000	6,814,000	6,815,000	34,016,638	
의존 재원 (국비)	소 계	3,371,459	3,371,500	3,372,000	3,372,500	3,373,000	16,860,459
	보조금	3,371,459	3,371,500	3,372,000	3,372,500	3,373,000	16,860,459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도비)	소 계	1,089,763	1,089,913	1,089,763	1,089,763	1,089,763	5,448,965
	지방세	1,089,763	1,089,913	1,089,763	1,089,763	1,089,763	5,448,96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군비	2,301,416	2,350,587	2,351,237	2,351,737	2,352,237	9,48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